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Papst Franziskus und das Grundeinkommen
im Kontext von Katholischer Soziallehre und Theologie

마르쿠스 슐락니트바이트 Markus Schlagnitweit

소개글: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번역: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코로나 팬데믹 1년차였던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본소득에 관한 교황의 입장은 같은 해 연말에 출간된 대화록 『꿈을 꾸자!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Let us Dream: The path to a better future.) (Simon and Schuster, 2020; 21세기북스, 2021)에서 보다 분명하게 표현된다. 해가 바뀐 후 2월 한국에서는 부활절 서한이 명백하게 기본소득 찬성을 뜻하는가와 관련하여 정치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서한에 등장하는 표현인 ‘보편적 급여(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을 뜻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활절 서한의 문맥 및 2020년 말에 출간된 대화록을 참조할 때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이 논쟁은 기본소득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 당시의 정세와 맞물려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이 논쟁은 일종의 해석 논쟁 또는 번역 논쟁처럼 전개되었지만, 『꿈을 꾸자!』를 참조할 때 기본소득에 대한 교황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호하게 말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금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 사회에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탐구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확신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교황은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힌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관계들을 새로 형성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주의의 낙인성을 제거하며 기술 중심의 노동유형의

점증하는 요구에 맞춰서 직업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본적 보장을 부여해 준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사람들이 시간을 임금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p. 131-132) 기본소득에 대한 교황의 입장은 명확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번역하여 올린 글은 기본소득에 관한 교황의 입장을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¹⁾ 저자는 오스트리아 가톨릭 사회아카데미(Katholische Sozialakademie Österreichs) 대표인 마르쿠스 슈락니트바이트 박사(Dr. Markus Schlagnitweit)이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사회아카데미는 오스트리아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대표적 단체 중의 하나이며, 이 글은 원래 2021년 9월 28일 오스트리아 주간지《DIE FURCHE》에 실렸으며²⁾ 저자의 허락을 받아 특별기고 형식으로 계간《기본소득》에 번역 게재한다.

종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는 종교인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으며 장로교, 성공회, 불교의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같은 해 『가톨릭 평론』 4호는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2019년 한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KK) 신학위원회는 토론회 〈기본소득이 신앙이다〉를 개최했고 2020년에도 기본소득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도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렸으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천도교의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2021년 11월에는 ‘하나님의 공의실현을 위한 그리스도교기본소득포럼’이 발족하였다. 이론적 작업으로서는 올해 초에 출판된 강원돈, 정미현 외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새물결플러스, 2022)를 들 수 있다. 앞으로 계간《기본소득》도 이와 같은 종교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개글 금민, 번역 이관형)

1) 프란치스코 교황의 부활절 서한 이전에 독일어권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의 원리와 사회국가의 보충성 원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적합성을 논한 글로서는 이미 가톨릭 신학교수인 Schramm(2008)을 들 수 있다. Schramm, Michael. "Subsidiäre Befähigungsgerechtigkeit durch das Solidarische Bürgergeld". In Straubhaar, Thomas (eds.)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Solidarisches Bürgergeld – mehr als sozialutopische Konzepte. Hamburg: Hamburg University Press, 2008, pp. 177-218.

2) 원문은 <https://www.furche.at/religion/papst-franziskus-und-das-grundeinkommen-6222652# timeline>. 교황 서한 이전에 이미 저자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한 바 있다. 다음 글을 참조하라. Schlagnitweit, M (2007).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Zugänge aus Katholischer Moralthologie und Soziallehre". In Gerechte Arbeitswelt. Globalisierung, Flexibilisierung, Armutsbekämpfung?, ed. K. Poier/F. Prettenhaler, Schriftenreihe des Dr. Karl Kummer-Instituts, Bd. 4, Graz: Leykam, pp. 249-256.

[기고문에 대한 저자의 배경 설명]

아래 기고문이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교류와 토론을 촉진시키기 바란다. 특히 가톨릭적인 맥락(katholischen Zusammenhängen)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그 맥락에서만 촉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권으로 이해되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텍스트가 기본소득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유럽 시민 행동 Europäischen Bürgerinitiative의 “EU 전역의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에 대한 비준을 통해서, 또한 유럽 미래위원회의 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말이다.

2021년 9월 28일. 비인에서

마르쿠스 솔라니트바이트, 가톨릭 사회아카데미 대표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

이제 교황도 참여하고 있다. 1년 전인 2020년 부활주일의 한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대중 운동(movimentos populares) 구성원들과 그들의 숨은 노고(Arbeit)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그 구성원들로 노점상, 환경미화원, 농업노동자, 소농, 건설노동자, 간병인(여성과 남성 모두를 의미함)을 꼽았다. 교황은 사회적 공생에서 그들의 중요한 공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 지향적 메커니즘을 지닌 경제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는, 그들을 보호하는 법적 보장은 고사하고 적절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회현상이 라틴 아메리카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람들(그 중 3분의 1은 여성)이 질병, 사고, 실업에 대한 보장이나 연금 없이 일하고 있다.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글로벌 팬데믹과 그에 필요한 대책의 맥락에서 보자면,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사회보장의 부족으로 인한 기아, 빈곤 및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세계 최빈국의 노동자 10명 중 7명³⁾이 사회부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공식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교황도 그의 서한에서 위태롭거나 비공식적인 상황에 일하고 있는 사

3) 프란치스코 교황, 『꿈을 꾸자!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꿈을』, 원헌(원절) 2021, ISBN 978-3-466-37272-0.

람들을 위하여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였다. 그것도 팬데믹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극복된 이후에도 시행되는 기본소득을 말이다.

· 이러한 기본소득은 “매우 인간적인 동시에 매우 그리스도교적인 요구 즉 권리 없는 노동자는 없다”라는 요구를 충족시킨다.

불과 6개월 후인 2020년 가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널리스트 오스틴 아이버리(Austen Ivereigh)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현재 독일어로도 출간된 그의 책 『꿈을 꾸자!』에서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감한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 내지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사회 재편을 요구한다. 거기에서 ‘보편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재차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교황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에게 빈곤을 지속시키는 고용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는 존엄성을 보장한다.
- 따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하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동시에 의존을 지속하게 만드는 복지국가의 낙인을 제거하며
- 뿐만 아니라 기술 중심의 노동유형이 점점 더 요구하는 직업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계를 위한 벌이와 커뮤니티 참여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술하지는 않는다. (만약 상술을 했더라면) 기본소득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즉 그 사회시스템이 금융에 그리고 교육·건강 등과 같은 여타의 사회영역에 미치는 효과들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서 매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교황의 기본소득 옹호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논평들은 그가 현실성을 결여하였다고 여기며, 그의 전문성을 의심하거나 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의 발언을 상대화한다. 교황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교황이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 많이 배려하는 이 세계의 가난한 지역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개선을 가져올 정도의 낮은 수준의 세계적 차원의 사회적 최소보장인 듯한데, 유럽 사회의 맥락에서는 사실 논의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심사상은 가톨릭 사회교리(Katholische Soziallehre)가 중심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가톨릭) 교회내부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교롭게도 사회교리는 종종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여 제시된다. 내 의견에 따르면 매우 부당하게도 말이다.

4) 독일 가톨릭 기업가 연맹BkU U. Hemel 회장의 2020년 12월 4일 Domradio.de와의 인터뷰에 따름(<https://www.domradio.de/nachrichten/2020-12-04/wirtschaftlich-unrealistisch-bkuzu-papst-forderung-nach-bedingungslosem-grundeinkommen>).

1.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

2020년 부활 주일 교황의 서한은 또한 교회 내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미국 예수회 회의 회장인 티모시 케시킴(Timothy Kesicki)⁵⁾의 반응은 특히나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단호하게 교황의 (기본소득) 의제를, 출간된 지 130년이 된 가톨릭 교회 최초의 사회 교서인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⁶⁾과 같은 반열에 위치시켰다. (교황이 간청한 지) 다시 1년이 흘렀다.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사실 레룸 노바룸 이래 현대 교회의 사회적 선언의 근본에는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즉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수입만으로도 삶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곧 “가족임금”). 그런데 충분한 임금인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질병, 사고, 고령, 교육, 실업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저 모든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하려는 이 요구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만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위에서 언급한 ILO 및 UNDP의 보고는 -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과는 무관하게 -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점증하는 데에 주목한다. 이 사람들은 일자리는 있으나 자신과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할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가 없다. 하물며 (지금처럼) 치명적인 소득 저하를 발생시키는 사건(팬데믹;역주)으로 인한 경우어야 무슨 말이 필요하라.

그러나 그 보장(Garantie)이라는 것도 그저 생존보장 정도의 가계소득 - 그 소득이 유급노동(Erwerbsarbeit)에 의한 것이든 유급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응분의 사회적 급여이전에 의한 것이든 - 일 뿐이어서 레룸 노바룸의 본래적인 근본 의제(Anliegen)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최초의 사회교서는 산업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당시로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이 통합문제가 단순히 생존보장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전혀 아님은 물론이다. 즉 반세기 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공식화한 것처럼, 이 문제는 오히려 일반적인 시민적 기본권과 자유권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본권의 보장에서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22조)⁷⁾. 23조는 이 권리를 상술한다. 즉 노동, 자유로운 직업선택, 합당하고 만족스러운 노동조건 및 실업 보호에 대한 각인의 권리를 명시한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 조항은 현대의 유급노동사회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발전한(그렇지만 결국은 우연적인) 이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 이해대로라면 인간 노동은 유급노동과 단순하게 동일시되며 그 조항의 실

5) 2020년 12월 4일자 “행동하는 신앙”을 참조할 것. (<https://faithinaction.org/news/pope-francis-sends-letter-to-movement-leaders-on-easter-sunday-amid-covid-19-calls-on-world-to-consider-universal-basic-wage/>).

6) 레룸 노바룸은 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가 내린 공개서한 형식의 교서이다.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사항들에 관하여(the new things)’ 적고 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변화들(revolutionary changes)’을 담고 있다. 노동과 자본, 정부와 시민의 관계와 상호 의무를 다룬다. 현대 가톨릭 사회교육의 기본텍스트로 간주된다.(역주) (https://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

7) 외교부 홈페이지 번역문에 따름(역주)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

행은 동시에 “정상적인 경우”를,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생존보장 Existenzsicherheit 내지 전제의 회복으로써 제시한다. 2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의 노동권은 유급노동의 권리로 되며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자유 시장경제 형식의, 따라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 가능한” 노동의 권리가 된다.

그런데 자유로운 직업 선택, 합당하고 만족스런 노동조건과 실업 보호와 같은 여타 기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생존보장적인 유급노동권의 보장은 곧바로 시장 경제적 근본원리와, 특히나 수요 공급의 자유로운 작동이 지니는 중심적인 조절기능과 논리적·실천적 모순에 처한다. 이 아포리아에 대해 현대의 유급 고용 사회들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유급노동사회 자체의 논리 그 자체가 인간의 생존적 기본 욕구가 되는, 생존보장적인 유급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한편으로 경제성장의 정도가 더 이상 다른 기본적인 욕구들의 충족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급노동(고용)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⁸⁾ 다른 한편으로는 유급노동사회들의 특징인 유급노동소득을 통한 생존보장이라는 규범적 전제 하에서 노동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유급노동(고용)에 대한 의무로 전락한다. 그래서 가령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적 조치들의 개발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장기연구는 유급고용을 받아들일 때 합당한 조건의 지속적인 침식과 약화를 보여준다.⁹⁾ 아울러 실업에 처했을 경우의 사회적 급여이전의 수급 자격을 노동실적의 제공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용한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이는 실업급여(어차피 그것도 사회보장 비용 납부를 통해 자격이 얻어지는 것인데)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구체적 모델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거나 여러 곳에서 이미 실행되어 왔다. 사실상 이러한 경향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노동권의 이행에 비해 노동의무의 증명이 우선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하간 유급노동사회에서는 노동의 권리보다 이리저리한 노동의무를 앞세우는 공간이 분명하고 끊임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히 국가적인 (사회법의) 입법은 그러한 공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 내부 시민에 의한, “좋은 삶”의 다양한 기획들에 대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가지 삶의 방식을, 즉 역사적으로 우연적이며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유급노동 사회의 노동윤리를 일반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삼고 사회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신 모든 사람이 사회의 부 Reichtum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Möglichkeiten를 개발하고 보장하는 것이 세계관적으로 독립적인 국가의 임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두 인권 조항은 역사발전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가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에 명시된 노동권 선언은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산업 사회의 사회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고려할 때 선언은 완전한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계보장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완해 넣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사회

8) “일자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과잉 생산, 불 보듯 뻔한 제품의 노후화, 인위적인 소비 촉진으로 시작하여 재앙적인 생태학적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격변을 수반하는 경제 정책 슬로건이다.

9) E. Tálos/H. Obinger, Sozialstaat Österreich (1945-2020), Innsbruck (Studienverlag) 2020, ISBN 978-3-7065-6052-8을 참조하라.

보장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유급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물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2. “노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우연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 사회정책을 여전히 지배하는 현대 유급노동사회 노동윤리의 의문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관련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라 지불되는 서비스로 노동개념을 협소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유급노동과 생계보장의 이런 규범적 동조화 Koppelung를 옹호하는 사람은 종종 “성서적인” 원칙을 - 특히 그리스도교적 맥락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때 - 끌어온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지도 말라”¹⁰⁾ 라고 한다. 성서의 규정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만이 부양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서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성서 구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 온 품꾼과 끝에 온 품꾼에 관한 성서의 비유¹¹⁾에서 모든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동일한 생계보장(가족) 임금을 받는다. 일과日課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일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짧게만 일을 하여 당연히 상응하는 실적이 경미한 사람이 이미 (때로는 상당히) 작업Leistung을 더 오랫동안 수행한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생계보장적인 생활비에 대한 권리는 수행된 실제 노동 실적이나 수행된 노동의 시장 가치 또는 수익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노동하려는 의지에 의해서만 측정된다. 그런데 언급한 비유는 그 내적 논리에 따라 그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수행된 노동의 시장가치가 성서적인 의미의 정의개념으로 볼 때 (생계보장적인) 임금지급의 타당한 근거로 제시될 수 없거나 그것과 분리된다면 인간 노동의 시장성은 일반적인 임금지급 근거로 통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대체 어떤 노동 형식이 지급 자격을 창출하느냐는 질문에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서는 노동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사회보장권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이것을 “시장성 있는” 노동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부활절 서한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점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며 심지어 필수적이지만 분명 시장성은 없는, “거래 가능한” 노동을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적인 생계보장을 요구한다. 사실,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에서 사회보장과 시장지향적이고 “거래 가능한” 유급노동의 동조화는 역설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것인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한 차별로 이어진다. 즉 요리사, 교사, 간병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것이다. 반면 주부, 어머니, 자신의 노부모를 돌보는 딸은 대체로 동일한 “노동”을 한 것이지만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의미 및 여타 사회적 자격 기준에 따르면 “노동을” 안 한 것이거나 기준 미달일 뿐인 “노동을” 한 것이다. 널

10)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 마태복음 20장 1-16절

리 인정받는 국민경제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급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필수 내지 유용 sinnvolle 서비스는 최소한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다. 즉 가사나 봉사활동 등의 형태이다. 이 서비스들은 - 프란치스코 교황도 자신의 책 『꿈을 꾸자!』에서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 사회적 공생 Zusammenleben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삶의 질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의식이든 실제 사회시스템이든 그것들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노동과 소득의 동조화라는 유급노동사회 패러다임의 틀 내에서, 사회보장급여를 계산할 때 가족노동 시간도 산입함으로써, 이런 부당함 Ungerechtigkeit에 대항하려는 시도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첫째, 여기에는 많은 여타의 무급노동 서비스가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무급노동 서비스의 (가능한 한) 전체적인 포함은 곧바로 모든 삶의 영역의 거의 예외 없는 경제화(상품화)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와 배치될 것이다. 사람들 간의 무상 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연대의식의 직접적 표현인 동시에 교육의 장이며, 사회적 결속의 필수불가결한 “기본 비타민 Grundvitamin”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노동이 인간적인 인격 menschlichen Person의 계발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성서적인 간상에 부합하며 가톨릭 사회교리에도 부응한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런 맥락에서 “노동의 존엄성” 까지 이야기하며 주저하지 않고 각자의 가능 정도에 따른 노동을 모든 인간의 윤리적 의무로 규정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옹호하면서 이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물론 성서의 노동개념과 이에 기초한 가톨릭 사회교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로 유급노동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노동은 생계를 보장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복무하는 자연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적인 창조 작업(종교적 차원)에 동참하는 것 Mitwirkung으로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인 환경 Umwelt 및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라 할 동시대인 Mitwelt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창조신 創造神의 형상대로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노동은 개인적 차원을 지닌다.¹²⁾ 노동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회적으로 결합하며 가치 인정 및 사회 참여와 동참의 기회를 유발한다. 시장경제의 지배 하에서 가톨릭 사회교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노동은 대체로 거부되는데, 적어도 무급 노동에서는 전적으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론하고 가톨릭 사회교리가 확인한 윤리적 노동의무는 어떤 경우든 가톨릭 사회교리가 요구하는 참된 인간적 노동의 차원들이 서로 균형 관계를 이루는 노동 형태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컨대 자연적 기능이 일반적으로 여타의 모든 차원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유급노동이 자동적으로 인류의 발전 Entfaltung에 도움이 되는 “선하고” 존엄한 노동인 것은 아니며, 그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도덕적 moralisch 의무화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는 이 노동의무의 이행을 오로지 유급노동시장(=고용시장)으로의 통합만을 기준삼아 측정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어떤 비판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기본소득의 실현은 사회보장과 사회참여의 동조화를 끌어내고, 노동개념을 협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정의와 여타의 왜곡을 유발하는 시장순응적인 유급노동에 제동을 거는 데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경험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기본소

12)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물론 예컨대 유급 활동으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환경 파괴적이며 사회적으로는 부정의를 증대시키거나 노동자 자신에게는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굴욕을 줄 수 있다.

득을 둘러싼 토론은 그 자체로 이미 인간적인 인격의 계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늘 새롭게 다시 제기되는 노동의 의미, 존엄성, 중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진한다.

3. 개인적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적 상위단위가 하위의 사회단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대신 떠맡는 것을 일절 금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상위단위는 하위단위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곳에는 - 보조적이라는 본래의 말뜻대로 -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보수적인 논박은 바로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원리와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들의 비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사람에게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능력을 박탈한다. 즉 그 사람은 도리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급여이전을 통해 “행복을 강요받는다”.

이 비난¹³⁾의 순전히 형식논리적인 결함은 논외로 하고도 위에서 서술한 것만으로 분명한 것은, 지배적인 시장 경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전혀 창출하지 못하며 그것의 “좋은”. 노동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가톨릭 사회교리적인 의미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신의 논리에서 볼 때 시장경제는 원래부터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 원리와 모순되기는커녕 그 반대로 그것으로부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톨릭 사회교리적인 의미의 “좋은” 노동에 대한 기회와 더불어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생계보장 형식을 제공하는 일에 시장경제가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말뜻 그대로¹⁴⁾ 보조적으로 subsidiär 작용한다. 개인은 기본소득을 통해 비로소 가톨릭 사회교리의 요구를 충족하는 “좋은” 노동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얻으며 그런 노동에 대해서만 도덕적 의무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책 『꿈을 꾸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증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것도 바로 보조성의 관점이다. 즉 존엄성을 위협하며 가난을 지속시키거나 생계상의 생존압력이 수용을 강요하는 고용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자유¹⁵⁾를 보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책에서 교황은 기본소득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들은 기

13) 그와 반대로 현대의 기본소득 안팎들은 통상적으로, 누진세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소득세를 통해 여하간 다시 일반대중에게 “변제하게” 되는 소득세 개혁을 계획한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고, 기본소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의 기본소득을 기부하든 증여를 하든 완전한 재량이 주어진다.

14) 라틴어 subsidium(보조)은 독일어 Hilfe(도움), Unterstützung(지원)과 같은 말이다.

15) 보수적 씨름에서는 흔히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 원리를 “개인적 책임의 원리”로 축소한다.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윤리적 패러다임에 따라 책임은, 제한이나 외부적 영향 요인 없이, 다양한 활동옵션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를 필수불가결하게 전제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부재는 오히려 “책임”에 대한 어떠한 연사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기본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기본적 자유가 - 보조성 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그것의 토대로서-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본소득이 사회적 온정주의(Bevormundung) 내지는 복지국가적 가부장주의(Paternalismus)의 발로라고 비난하려 든다. 교황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동시에 의존을 지속하게 만드는 복지국가의 낙인찍기에 대해 경고하며 기본소득이 바로 그 해독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자유의 여지(Freiheitsraum)와 더불어 책임의 여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고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교황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 중심적인 작업방식이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기본소득은 직업 간 전환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두 갈래의 접근방식과 함께 교황이 기본소득을 온전히 가톨릭 사회교리적인 의미로 이해된 보조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보조 subsidium”로서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연대의 강화

연대는 사회적 결속의 “기본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기본적으로 연대를 도덕적 요청으로 이해하지도 연대적 태도를 도덕적 미덕(Tugend)으로 이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기정사실(Seinstatsache)로서, 즉 사회생활에서 기능하는 구성요소이자 기본조건으로서 이해한다. 유일자(唯一者)인 개인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보장하는 한에서 그 정당성을 지니는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이유이며 [...] 버팀목이자 목표인”¹⁶⁾ 만큼이나 인간 개인의 자유도 다시 그만큼이나 그 자체로 존립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지니는 윤리적 의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와 그 제도들은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이는 다시 사회적 삶의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적 형성에서 발전한다.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근본원리인 이 연대가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위협해진다고 본다.

- a)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더 작아지면, 이는 연대 의지를 과도하게 압박하여 결국은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노동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고전적인 유급노동만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유급노동사회 패러다임의 노동 개념 및 가치창출 개념에서만,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을 협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운 노동개념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는 (심지어 대부분이) 임금 없이도 창출된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 교황의 부활절 서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또는 아예 전적으로 임금보상 없이 사회 공헌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지 연대에 위협에 빠뜨리는 일은 아닐 것이다.

16) 제2차 바티칸공의회, 기쁨과 희망, 25.(Vaticanum II, Gaudium et spes, 25.)

b) 기본소득이 사회의 상당 부분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산적 기여를 회피하기 위해 오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연대행동은 크게 보면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거나 배제되는 것을 겪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나쁘게 대하는” 이 사회에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되돌려 줄 동기가 희박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역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통해 - 무조건적인 존중과 포용의 신호를 주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 좋게 대하는” 사회에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용의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일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기본소득은 연대적인 태도, 연대적인 행동 내지 활동의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의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놓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활비 벌이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병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지적한 것 같다. 교황은 사회생활의 이 두 측면(생활비 벌이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매우 당연한 것이자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양자는 인간 개인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급고용사회보다 훨씬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유급고용사회는 생계 벌이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그만큼이나 삶에 필수적인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성과는 무상으로 가져간다.

5. 최고의 윤리적 요구

마지막으로 자유와 윤리적 책임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원칙적인 논평을 하자면,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언제나 사회의 성과주의 노동윤리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있으면 아무도 더 이상 노동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제 발등을 찍는다.¹⁷⁾ 그 말을 통해 그들이 극히 비판적인 인간상을 드러내서만이 아니다.¹⁸⁾ 여기서 사용하는 도덕 개념도 극히 의심스럽다. 여기서 인간이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를 통해서만 도덕적으로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윤리적 행위의 첫 번째 기본조건, 즉 자유는 무시된다. 도덕적 책임은 자유를 전제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 역시도 책임 있는 행사를 필요로 한다.)

부연하자면, 오용의 위험은 자유가 있는 곳에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법적 압력이나 제재 위협을 통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교육학적 경험은 경계를 긋고, 규칙을 정하고, 제재를 실행하는 데 국한되어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는 기껏해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단히 허용되는 것, 그러나 그 자체로는 결코 좋지 않은 것의 경계를 아슬아

17) 본문은 “그들은 악마를 벽에 그린다[sie malen den Teufel am Wand]”이다. 그런데 이 말은 관용적으로 “악마를 그려 넣는 실수를 범한다”, 즉 “제 발등을 찍는다”는 의미로 쓰인다.(역주)

18) 모든 사람이 가끔은, 비록 “물어두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거나 목적의식적인 것에서 시작하려는, 원초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그들은 믿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되고 간주되는지는 물론 경험에 달려 있지만 주변의 인정여부도 크게 좌우한다.

슬하게 따라가는 것만 온전한 의미, 즉 내면의 통찰과 자유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 사회적 공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들Rahmenbedingungen과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 법률 시스템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윤리는 사회 질서를 단순히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오히려 목표는 항상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발전, 즉 자유를 가지고 또는 자유 안에서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본소득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여지를 증대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사회윤리에 의거하여 평가하자면 이러한 증대된 자유의 여지는 공동도덕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정반대로 - 윤리적 주체들로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요구가 현저하게 증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활동여지Gestaltungsspielräume의 의미에서 자유를 허용하고 보장하면 할수록 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엄격하게streng 제재하는 것도 정당화된다.¹⁹⁾

기본소득이 반사회적이라거나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따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사회모델보다 개인에게 훨씬 더 큰 윤리적 요구를 부과한다고 확정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제 인생과는, 혹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기본소득이 부여하는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론의 여지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직면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 점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 우려하고 때로는 심지어 두려워하는 점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논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육시스템의 중요한 과제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 기관의 교육목표는 노동 시장의 요구 사항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맞춰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기본소득의 신학

“기본소득 개념은 현실적인 인간상에 기초한 것이며 성서에 근거한, 인간의 죄악적인 파괴성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이는 결국 기본소득의 이념에 대한 결정적인 신학적-인류학적 질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도록 반사회적이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 즉 주어진 자유를 자기 자신 내지 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행사하기 위해 인간에게 는 감독 당국과 기타 압력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근본물음을 제기한다. 성서 인류학은 인

19) 그것은, 기본소득 사회에서는 특히 미신고노동SchwarzArbeit과 부패 등에 적용된다.

간의 “자연적이고 원천적인 선함”에 대한 순진한 낙관론을 맹종하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회의론자들의 인류학적 비관론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을 가진다면 성서 전체의 메시지, 특히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상과 기본 동력은, 인간이 언제나 무조건적인 신의 보살핌과 사랑의 체험을 통해 치유되고, 이 체험에 응하여 자기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듭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이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서 특히 예수의 복음에서 핵심 내용이다! - 따라서 기본소득의 인간상을 비현실적이고 순진하며 그릇된 것으로 일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신이 자신의 사랑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인간에게 기대할 때 -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다시 말해 선행급부²⁰⁾ 없이, 반대급부 Gegenleistung 없이, 다른 공로^{Verdienst} 없이 오직 인간은 신의 이 무조건적인 선행급부에 적합한 응답을 찾을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만으로 - 이런 잘못된되고 비현실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다고 신에게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성서의 기본 범주인 무조건성을 직접적인 사회정책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자유의 기회^{Freiraum}가 부여되고 열리는데,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선행급부(=기본소득)에 걸맞게 행동하고 성공적인 사회적 공존에 기여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기본소득과 함께 개인에게 기대되는 개별적 책임은 성과관리나 징벌과 결합된 남용금지 위에 설계된 다른 모든 사회 모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바로 이 - 확실히 위험한 - 자유와 책임의 부과는 그 모범을 성서의 하느님 그 자신이 인간에게 기대하고 넘겨주는 저 무조건성에서 발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에서 명시적이라 할 만한 신학적 언급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기본소득의 이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처음으로 표현한 것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서한이라는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교황의 옹호는 명시적인 신학적 논증에 근거를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7. 요약

물론 하느님 나라의 최종 계시와 현실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정치적인 방법은 타협과 중간 단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사회는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없을 것이지만, 여러 사회정책 영역에서 영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실행단계가 필요하다. 물론 그것들을 나열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이 기고문의 과제는 아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오히려 현실정치와 관련된 방향 또는 목표에 대한 사

20) 대가(代價)를 받기에 앞서 미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선지급, 선분배, 선금’ 등으로도 번역가능하며, 여기서는 ‘기본소득’을 가리킨다. (역주)

회정치적 요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정치를 맹목적인 실용주의로 이해하지 않고 의미 있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단계들을 관철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그러하다.

동시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단선적인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퇴출”되어 불안정한 인구 집단을 더욱 주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없는 생산성의 조건에서 - 특히 기술로 인해서 - 사회조직과 사회정책을 오히려 현대화하여 그들을 산업사회적인(그렇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유급노동 패러다임에 의해 야기된 왜곡과 부당함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지는 결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사회적 결속과 사회 정의의 모든 문제와 도전을 단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일 것이다.

이 순진함은 분명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분명하게 옹호하고 - 이 글에서 보여주려고 했듯이 - 그럼으로써 교회의 사회교리의 토대 위에 확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기본소득 개념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성서 신학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글은 적어도 그리스도교인들이 - 그들의 정당 선호나 이해관계 정치의 선호에 상관없이 - 진지하게 기본소득과 대면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